

제2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5. 9. 2.

임실군의회 의장

1. 제정이유

전북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사)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에 대한 용어를 규정함 (안 제2조)
- 나.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
- 다. 사업비 지원 절차 등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3.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 2015년 10백만원 반영
- 다. 협의 등
 - 1) 부패영향평가/규제심사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라. 기타
 - 1) 입법예고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2015. 7. 28 ~ 8. 17)
 - 2)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 사유서)
 - 3) 관계법령 발췌문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이하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사)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이하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이란 전북지역의 정치·경제·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기업인들이 앞장서 사회연대협약 성격의 범도민 협의체를 구성 하여 도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역량을 결집하여 전라북도를 21세기 환황해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선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도민회의”란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을 총괄하고 이를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3. “지역본부”란 도민회의와 연대하거나 자발적으로 범도민운동을 전개하는 시군단위 단체를 말한다.

제3조(행·재정 지원)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 및 마케팅 사업
2. 고향 방문단 지역마켓투어 사업
3.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 및 참여 사업
4.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 사업

5.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는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및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 지원 결정) 군수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공익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 비율과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업비의 신청·지급·정산·환수 등에 관하여는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 지원 (안 제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인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지역경제과장 한성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전북임실048		
정책명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임실군	
	부서명	지역경제과	
	담당자명	이자운	전화번호 063-640-2405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8월 11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지역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에 대한 용어를 규정함 (안 제2조) ○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 사업계획서 제출 등 사업비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안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p>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p> <p>○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p>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년 08월 11일</p>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복지과장</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박경숙/063-640-2123)</p> <p>지역경제과장 귀하</p>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4.0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